
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기자채를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(안 제86조 제4호의2 및 제89조의3제2호의2 신설)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